

여성의 직조노동과 지위의 변화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Weaving Labor and the status of Women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조교수 김성희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 Kim, Sung-Hee

〈목 차〉

- | | |
|----------------------|----------------------------|
| I. 서 론 | V. 산업사회에서의 여성의 임노동 |
| II.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 VI. 가사노동 및 임노동의 가치와 여성의 지위 |
| III. 전통사회에서의 직조노동 | VII. 결 론 |
| IV. 직조노동의 가치와 여성의 지위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article was carried out to clarify the change in the weaving labor and the status of women from pre-industrial society to industrial society. For the purpose, this study made use of literature review.

It was founded that women in pre-industrial society had weaved not only for private use but also for payment taxes and household economy. In this sense the women in pre-industrial society had participated in productive work like the ones of industrial society who participate in labor force market. With this economic activity women had occupied the status not being evaluated low.

The major conclusion was as follows. The women in pre-industrial society had maintained their own economic activity which contributed to nation and household economy, but the women in industrial society were deprived of this activity and their status was depreciated.

◆ 주요어: 여성, 직조, 노동, 지위

I. 서 론

전통사회의 여성은 주로 가내에서 일하였으므로 오늘날의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족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가사노동에만 힘쓴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현대사회에서 '안방규수'라는 말은 마치 산업 사회의 '주부'가 무보수 노동인 가사노동에 종사하여 '노는 집단'으로 오해받는 것처럼 가내에서 별 생산적 공헌 없이 안방에만 갇혀 지내던 과거의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사회의 여성들은 가족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노동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가내에서 포를 짜서 생산된 직조물을 시장에서 교환하여 가족을 부양하거나 가계의 부를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세납부를 위한 직조를 함으로써 국가 경제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취업주부들이 가사노동 외에 직장노동을 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사회의 많은 주부들은 가내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주로 취업자를 의미하며, 취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이거나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를 말한다(통계청, 2000a). 전통사회 여성은 가정과 분리된 노동시장에 취업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날의 무급가족종사자처럼 가내에서 직조노동으로 가계와 사회경제에 기여하였으므로 경제활동인구였다고 볼 수 있다. 직조를 전통사회 여성의 경제활동이라 본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현대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전통사회 여성은 사회적이고 공적인 노동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처럼 현대의 시각으로 잘못 판단하기 쉬운 또 하나의 가정은 전통사회의 여성은 가내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통사회의 주부는 일반적으로 안방에만 갇혀 지냈기 때문에 그 지위가 억압적인 것 이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여성해방론자들은 가부장제와 성별분업에 따른 가

사노동 수행이 여성 억압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지은희, 1985).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가부장제가 강하게 지배하고 여성만이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했던 전통사회의 여성은 매우 억압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여성에 대한 조건에서 바라본 오류일 수 있다.

여성이 하는 일의 보이지 않는 성격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 여성의 물적 생산노동의 상실은 남성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킨다(장필화, 1998). 오늘날의 전업주부가 '노는 사람'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은 직조와 같은 물적 생산노동이 사라지면서 여성의 남성의 임금노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의 여성은 대부분 직조를 하였다. 일반계 층의 여성은 가족의 의복마련과 세금납부를 위해, 왕족이나 상류층의 여성은 일반 여성을 독려하기 위해 직조를 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은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직조는 농업노동과는 달리 여성의 독점해온 영역이었다. 전통사회의 여성은 직조라는 고유영역을 통해 독자적인 경제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지위를 오늘날의 전업주부가 열악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가정일 수 있다.

가부장제의 지배 속에서도 남성은 오히려 여성은 추앙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전통사회의 여성은 고유한 물적 생산노동으로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그들의 지위는 남성에 대해 훨씬 대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체계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였다. 자급자족적으로 수행되고 직업이 아닌 가사로 전수되었던 여성의 직조노동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가내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던 직조노동은 남성이 조직한 공장으로 이전되었고 가정에 남은 여성은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가사노동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취업 여성으로 분리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의 성격이 산업화를 전후하여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통사회 여성의 직조활동을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규명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여성의 수행한 직조노동의 실태와 이의 가치를 밝힌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의 여성의 직조활동을 고찰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의 역사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직조노동이 변모되는 과정과 달라진 여성의 지위를 병행하여 조사해봄으로써 여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사료의 부족으로 여성의 지위와 일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일반적인 여성의 지위변화로서 직조노동으로 인한 지위변화를 논하는데는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직조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하던 고유한 일이면서 명백히 가계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화폐가치로 환산되는 일이었으므로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직조노동이 사라진 산업화 시기의 여성 지위와 전통사회의 여성의 지위를 비교해 봄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변화시킨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에는 취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고 주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 여성들이 가내에서 행하던 생산노동은 그들이 가정주부로서 가내에서 행한 노동이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내에서 수공업적으로 행하던 직조노동은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노동일 뿐 아니라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되었던 경제활동이 간주한다.

생활과 일터가 분리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 가족의 사적인 소비를 위해 행해진 직조노동과 조세납부 및 시장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된 직조노동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연구의 제한점은 계속적인 자료의 발굴로 후속연

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통사회라 함은 산업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농경에 기초를 둔 사회를 의미한다. 농경사회는 삼국시대 이전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료가 남아 있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전통사회로 본다. 그리고 산업화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항 이후 직조물의 수입이 증가되어 가내 직조노동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때를 산업화의 시점으로 본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내노동의 일부인 직조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내에서는 가족원을 위한 사적인 노동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성격을 지닌 공적인 노동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공적 경제활동은 임노동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경제활동과 분리된 사적인 노동은 가사노동으로 가정에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의 직조노동의 변화는 임노동과 가사노동으로 분리하여 논의한다.

전통사회의 여성에 관한 자료 특히 노동에 관한 자료는 역사기록이 남성과 집권층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자료로서 각종 사료 외에 이를 분석한 2차 자료 등 여성의 직조생활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이용하였다.

III. 전통사회에서의 직조노동

1. 삼국시대

직조는 고대 삼국시대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었다. 삼국지 위치 변진전(三國志 魏志 弁辰專)에 “진한 사람들은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를 하며 비단과 베를 짤 줄 안다” 했고, 마한전(馬韓傳)에 “잠상(蠶桑)을 알며 면포(綿布)를 짠다”, 진한전(辰韓專)에 “새벽부터 잠상을 하여 명주를 짠다” 하였다(맹인재, 2000; 손제하a, 1996에서 재인용).

당서(唐書) 신라에 “아내를 얻어야 의복을 만들어 입었다”고 했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

원희, 1984a에서 재인용). 고구려의 대안리 제 1호분에는 여인이 베틀에 앉아서 베를 짜는 광경이 그려져 있고, 덕흥리 고분 벽화에는 견우와 직녀도가 그려져 있다(김기웅, 1994; 전호태, 1999).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인이 직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여성의 직조를 하였다는 것은 삼국유사의 연오랑과 세오녀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해 바닷가’에 살던 부부 연오와 세오가 일본으로 가서 신라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자 왕이 사자(使者)를 일본에 보내어 연오와 세오를 찾으니 연오가 “나의 비(妃)가 찬 세초(細綃)가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좋으리라(일연, 1994)”하였다.

직조는 일반 여성 뿐 아니라 여왕과 왕비도 하였다. 삼국유사에 “진덕여왕은 스스로 태평가를 짓고 비단을 짜고 무늬를 놓아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당나라 임금에게 바쳤다(일연, 1994)”고 했다. 삼국사기에 신라의 시조 혁거세의 왕비 알영은 육부(六部)를 순회하며 위무(慰撫)할 때 같이 가서 농잡(農蠶)을 권독하였다 했고, 신라 유리왕은 국가행사로 장례하여 육부(六部)를 정한 후 이분(二分)하여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나누어, 가을 7월 기망(16일)부터 매일 일찍 대부(大部)의 마당에 모여 길쌈을 하게 하였다 했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4a에서 재인용). 수행목적은 계층에 따라 달랐지만 직조는 거의 모든 계층의 여성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직조물은 일차적으로 가족이 소비하는데 사용되었지만 잉여 직조물은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되어 다른 사회적인 일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삼국유사 선율환생조에 망덕사의 중 선율이 저승에서 인간세계로 오는 도중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 말이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곱게 찬 베를 침구 사이에 두었으니 그 베를 판 돈으로 경폭(耕幅)¹⁾을 삼아 주시면 황천에서도 은혜가 되겠다(일연, 1994)”고 하였다.

직조물은 조세로서 국가의 중요한 재원이 되기도 했다. 고구려에서는 부세(賦稅)로 비단과 곡식을 받았고, 인세(人稅)로 삼베 5필과 곡물 5섬을 받았다.

직업이 없는 유인(遊人)은 인세로 삼 년에 한 번 열 사람이 공동으로 가는 배 한 필과 며 한 섬을 납부했다. 백제에서는 주서(周書)에 의하면 부세로 베와 비단, 실, 삼, 쌀 등을 받았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4a에서 재인용). 국가에서는 직물을 과(寡), 고(孤), 독자(獨子), 수병(守兵)들에게 사여하였고(박남수, 1996), 중국에 공납하거나 교역하는데 사용하였다.

직조 기술을 가진 여성은 궁중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장인(匠人)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신라궁중에서는 왕족의 용품이나 왕족에게 사여하는 물품 및 중국과의 교역품을 충당하기 위해 수공업관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경덕왕(759)때에는 고치실을 켜는 일을 맡은 소전에 모(母) 6인, 실을 정련한 후 표백을 맡은 표전에 모 10인, 여러 종류의 옷감을 생산하는 조하방에 모 23인, 기전에 모 8인, 염색을 맡은 염궁에 모 11인, 홍전에 모 6인, 소방전에 모 6인, 옷감을 찬 후에 염을 맡은 찬염전에 모 6인, 바느질을 맡은 침방에 여자 16인을 두었다(박남수, 1996).

신라 장인(匠人)의 신분은 노비(관노비)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4~6두품이었다고 보는 견해와 4·5두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박남수, 1996), 직조 공으로서 여성의 신분은 낮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직조기술을 가진 여성은 국가간 문화 교류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일본서기 오진천황 14년에 백제왕이 봉의공녀(縫衣工女)를 보냈는데 이것이 지금의 구메노라는 비단 짜는 직업의 시조가 되었다 한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4a에서 재인용). 그리고 일본서기 오진 천황 37년에 “구례(吳)에 기누누이(縫工女)를 요구”하여 4명의 여공(女工)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데, ‘구례’란 구려(句麗)가 변하여 생긴 말로 실은 고구려를 말하므로 일본에 베짜는 기술과 베짜는 도구를 전한 것은 고구려 여성의 업적이다(손제하b, 1996). ‘만엽집’에서 볼 수 있는 ‘고려금(高麗錦)’도 고구려 계통 사람이 찬 것이라 하므로 일본에 의류가 전해진 것은 백제 및 고구려의 여성에 의해서 였다.

1) 경전을 베끼는 데 필요한 비용

2. 고려시대

고려의 여성도 삼국시대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길쌈을 하였다. 고려도경(서궁, 1998)에 “고려는 모시와 삼을 스스로 심어 많은 사람들이 베옷(布)을 입는다” 했다. 여성은 어릴 때부터 길쌈과 바느질을 배워 직조와 의복손질에 많은 노력을 들였다. 이규보(1168~1241년)는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이런 딸을 애도하면서 “금년에 4살로 자못 능히 길쌈과 바느질을 배웠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3a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고려시대 서민층이 즐겨 불렀던 서경별곡(西京別曲)에 “여의기보다는 차라리 길삼베 버리고 사랑하신다면 울며 울며 쫓겠나이다(이가원 외 4인, 1985)”라는 가사가 있다. 임과 이별하기보다 길삼베를 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길삼베가 여인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길쌈은 서민층 뿐 아니라 사가(士家)의 부인들도 하였다. 이승안(1349~1392년)의 도은집 선부인(先夫人) 행장에 “평소에 어머니께서는 베짜고 실 뽑고 바느질하시는 수고를 일찍이 잠시도 쉬지 않으셨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3b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원천석도 운곡시사(耘谷詩史)에 원장홍의 어머니 조부인을 추모하면서 “길쌈하고 청상(稱舅)²⁾함에 옛 현부(賢婦)를 본받았으니 평생의 정결을 누가 견줄 손가(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3b에서 재인용)”라며 기리었다.

상류층의 부녀는 부유한 경우에도 길쌈을 하였다. 금자광록대부 참지정사 상장군 김공부인 인씨(金紫光祿大夫 參知政事 上將軍 金公婦人 印氏) 묘지에 “집이 본래 부유하여도 부인은 여자가 할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자손들이 말리자 부인은 길쌈과 누에치는 일은 여자의 일이다… 어찌 잠시인들 놓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그러다 공이 정승이 된 뒤에야 그 일을 친히 하지 않고 비첨들에게 일체 맡기었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3b에서 재인용)”고 했다.

재인용”고 했다.

고려여성은 가족원의 소비를 위해서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직조를 하였다. 남편이 생계를 부양할 수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해 부인은 직조를 하였다. 정몽주(1337~1392년)의 포은선생집에 정별간 남편을 둔 부인이 “베짜는 것을 그만두고 남편에게서 온 편지를 돌려보니 금(錦)자가 새롭구나(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3b에서 재인용)”라고 변방에 나가 있는 남편을 기다리며 베짜는 것을 볼 수 있다.

사가에서도 길쌈은 여성이 가계를 운영해야 할 경우 주된 생업수단이었다. 이곡(1298~1351년)의 가정집(稼亭集) 절부(節婦) 조씨전(曹氏傳)에 “조씨는 30세도 안되어 남편과 시아버지지를 잊고 50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밤낮으로 여공(女工)³⁾에 힘써 딸과 손자들을 먹이고 입히며… 손님접대, 혼인, 장례, 제사비용을 마련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3b에서 재인용)”고 했다.

부인들은 가게가 곤궁한 경우 바느질한 옷을 팔아 생계를 꾸리기도 하였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부엌에 아침거리가 없어 아내가 갓옷(겨울옷)을 전당잡히려 하니 처음에는 꾸짖으며 말렸네… 아내가 대뜸 화를 내며 말하기를… 갓옷이 비록 좋지는 못 하나 제가 지은 것이니 아끼고 애석해함이 당신보다 더하지만 우선 입이 이보다 더 급하오… 하인을 불러 즉시 팔려보내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3b에서 재인용)”라는 글귀가 있다. 길재(1353-1419)의 애은집에도 그의 아내 신씨는 남편의 뜻을 본받아 생활하였으나 혹 식량이 떨어지면 몰래 옷가지를 팔았다 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3b에서 재인용). 남편이 가계를 부양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인이 직조와 바느질로써 이를 보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포는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화폐로 통용되었다.

2) 명절때 어른께 축수하는 것

3) 길쌈, 바느질

고려도경에 의하면 고려에서는 저포(보시), 은병(銀瓶)으로 가치를 표준삼아 교역을 하였다(서궁, 1998). 또는 대개 대규모 거래에 필 단위로 사용되었고 일상적인 소액 거래에는 쌀과 같은 곡물이 되(升) 단위로 사용되었다. 이런 화폐기능을 가진 직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여성인력이 동원되었다. 고려사에 노역을 피하고자 포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포의 올이 거칠고 성글어서 점차 두서너 새(升)⁴⁾로 전락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여자의 노력이 비록 수고로우나 백성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3a: 319재인용).”

고려시대에도 직물은 국가의 중요한 재정원이었다. 조세(租稅), 공부(貢賦), 역역(力役)으로부터 왕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얻어졌는데 조세는 토지를 통해 수취하였고, 공부는 지방에서 포(布)나 토산물 등 현물을 통해, 역역은 국민들의 노동력을 통해 수취하였다(변태섭, 1987).

국가에서는 포를 포상물품 또는 빈민구제용품, 교역품 등으로 사용하였다. 고려사 성종조 기록에 따르면 효자인 차달 형제에게 각각 곡식 백석과 은사발 2개, 무늬비단 베를 합해 68필을 주었고, 어미와 아내의 나이가 80인 경우 3품 이상인 자에게는 베 14필과 차 2근을, 서인으로 백세 이상인 자에게 베 20필과 쌀 10석을 하사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3a에서 재인용). 현종 때에는 백성으로 80세 이상인 사람과 중병환자 635명에게 베와 비단, 차와 약,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고 정종 때에는 빈민에게 햇솜과 베를 주도록 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1983a에서 재인용)“보시와 견직물은 대송(代宋) 수출품으로 국제교역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황명수 외 6인, 1992).

3.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도 부녀의 일이었던 직조는 무엇보다도

자가(自家)의 의료(衣料) 수급을 위해 수행되었다. 종보문헌비고(이북만, 1948에서 재인용)에 “농사지은 즉 먹으며 포를 짠 즉 입는다”⁵⁾라고 한 것은 자급자족적 경제 속에서 직조가 자가소비를 위해 행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조는 거의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이능화(1990)에 따르면 면포(綿布) 직조의 경우 조선팔도에 함경도와 강원도의 산군을 덜고는 목화를 심지 않은 곳이 없다 했다. 마포(麻布)는 함경도 육진의 것이 가장 좋아 북포라 하며 경상도에서 나는 베를 영포, 안동에서 나는 것을 안동포, 강원에서 나는 것을 강포라 하는데 이는 다 여자의 공력으로 된 물건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부녀들은 면포와 마포 직조 외에 누에치기를 하였다. 이조의 나랏법에 종상지법(種桑之法)이 있어 후비(后妃)가 친히 누에치기를 하여 백성에게 권장하는 뜻을 보였다. 이는 그만큼 누에치기를 중히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나 견포류는 일반 백성의 의복재료로는 금지되어 있었다. 마와 저마는 여름 의복으로 사용되었지만 의생활 양식이 대체로 계절에 따라 다른 재료의 의복을 갖추어 입지 않았으므로 조선초기 이래 기본적인 의복재료로 목면이 생산되었다(梶村秀樹, 1983).

부녀에 의해 가내소비를 위해 생산되던 면포의 직조량은 조선 면업의 생산 규모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요량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의 육체노동자가 사시사철 주야로 한 별의 의복만을 입고 지낸다면 3년 후에는 도저히 입을 수 없을 만큼 누더기가 된다. 그러므로 토포로 환산하여 1인당 연 1/3필 이하로는 생활할 수 없다. 이것이 최저 한계이다. 당시 조선의 관습은 하인이 주인으로부터 여름, 겨울 옷을 한 별씩 받는 것이 상용한 대우였다. 따라서 의복 이외에 필요한 것도 더하면 토포로 약 2필 정도가 1인당 연간 수요량의 상한이다(梶村秀樹, 1983).”

가구당 평균 인원수는 19세기 농가에서는 4인을 약간 넘었고(四方博; 김용섭, 1972에서 재인용) 조선

4) 날을 세는 단위로 80날을 한 새라고 한다.

5) 我國民貧無剩財 耕田而食 織布而衣

후기 도시가족에서는 3~4인에 지나지 않았다(최재석, 1983). 조선말기 평균 가구원수를 4인으로 볼 경우 가구당 면포 수요량은 연간 약 8필 정도로 추산된다. 이러한 가족원의 소비를 위한 것 외에 조선의 법제에 의하면 모든 양민 성년 남자는 병역대신 연 2필의 면포를 납부해야 했다(梶村秀樹, 1983). 병역을 면포로 대신할 것까지 포함하면 성인 남자가 1인 있는 가구에서는 면포가 연간 10필 정도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량은 연간 일인당 토포로 약 1필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梶村秀樹, 1983) 4인 가구에서 실제 가내소비를 위해 생산하였을 양은 6필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면포 1필을 원사에서 다 짜는데는 적어도 부녀가 10일 정도 노동을 해야 했다. 자가소비에 필요한 최소 양인 6필의 면포를 짤 경우에는 60일 정도 일을 해야했고, 상품화를 위해 40필⁶⁾을 짤 경우에는 일년 내내 직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직조는 일반 여성 뿐 아니라 사가(士家)의 여성도 하였다. 직조는 특히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양반 가정의 혼자된 여성 또는 가난한 양반 가정의 여성들에게 생계유지 수단으로 중요하였다. 김만중의 모친 윤씨부인행장문에 “공주의 손녀로 무남독녀로 귀히 생장했건만, 병자호란에 남편 잃고 아들 형체를 길러내면서 손수 베틀에 앓아 명주를 짜고 아들의 책을 사기 위해 짜던 명주를 중도에 끊어 바꾸었다(김용숙, 1971)”고 했다.

가계를 부양할 남편이 있더라도 생업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사가의 부인들은 직조를 하였다. 송익필(1534-1599)의 구봉집에 “가난한 선비들의 아내는 밤에는 베를 짜고 낮에는 김을 맨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1990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정신노동은 가치롭게 여겼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육체노동은 경시하였다. 따라서 일상의 육체노동을 대신해 주는 노비가 절대 필요하였다. 그러나 양반이라 하여 모두 노비를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 1630년 경상도 산음현 호적 조사에 의하면 양반의 64%만이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최재석, 1983). 조선 후기에도 19세기 토지 소유상황을 보면 양반 중 부농(富農)은 7.1%, 貧農(빈농)이 55%로 대부분의 양반은 영세하였다(김용섭, 1972). 따라서 노비가 없는 대부분의 사가에서 여성은 의류소비와 가계운영을 위해 직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성교육서에서는 사가의 부인들이 길쌈을 할 것을 권장하였다. 여사서(이규순 교주, 1983)에 “무릇 여자되오매 모름지기 여자가 해야 할 일을 배울 것이니 삼을 배고 모시를 삼되 굵고 가는 것을 같지 않게 하며 실 켜는 수레로 배짜는 일을 할 때 그 방직 힘에 있어서 일체 총총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가벼운 집은 두루마기로 해서 내리고 가는 베는 통에 넣으며 명주와 겹직물과 모시와 삼베를 직조하는데 겹치게 하면 또한 가히 돈으로 팔 수 있으며 또한 가히 스스로 바느질 할 것이다”라고 했다.

사가의 여성 뿐 아니라 일반 여성도 가계가 빈곤한 경우에는 시장교환을 목적으로 직물을 생산하였다. 빈곤한 가정의 여성들이 직조로써 가계를 운영하거나 보조하였던 것은 이능화의 기록(1990)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난한 집으로 이를진대 부녀가 직조를 하여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려니 스스로는 치마저고리도 제대로 없는 이가 많았다. 농가의 집집 부녀가 무명 짜기를 정업으로 하여 시골에서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 이들 거의가 부녀의 길쌈으로 기초를 삼아 점점 업을 불리어 나간 사람들이다.”

홍양호(정조시대)의 이계집(耳溪集)에 실린 시에도 가난한 여성의 팔기 위해 직조하였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3월에 심은 삼을 7월에 거두어, 5월에 실을 내어 열흘 남짓 행구어서, 부드러운 손을 놀려 가는 베를 짜내니, 매미 날개인 듯 엷어서 주먹 안에 드는데, 아깝게도 남쪽 상인에다 넘겨주고, 몸에 다간 거친 베로 몽당치마 두루 도다(이능화, 1990에서 재인용).”

허난설헌도 빈녀(貧女)라는 시에서 “밤늦게까지 배

6) 1887년 경상·충청·경기도에서 조사된 면포 생산량을 보면 1호당 평균 생산량은 최하 2필에서 최고 40필에 이르고 있다(梶村秀樹, 1983:140-143).

틀에 앉아 쉬지 않으니, 베틀만 빼걱빼걱 차갑게 올 어댄다, 틀에서 또 한 필 짜내건만, 이번에는 누구의 옷이 되려나(이능화, 1990에서 재인용)"라고 가난한 여성이 시장교환을 위해 직조를 하였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부녀들은 길쌈을 하여 논도 사고 밭도 사서 가계의 부를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30세 전에 남편을 여의고 시모님을 봉양하면서 곤궁한 가세를 직조로 일으켰던 능주 구씨(具氏)는 1872년에 지은 경자록(警子錄)에 "농사를 짓지 않는 이 집안에… 저 물레에 목을 매어 한 필 두 필 내여 파니 한 냥 두 냥 이문 일네" 이렇게 장만하여 논도 사고 밭도 사네(이정옥, 1999)"라고 직조로써 가세를 넓힌 것을 기록하였다.

1887년 경상·충청·경기도에서 조사된 면포 생산량을 보면 1호당 평균 생산량은 최하 2필, 최고 40필이었고, 1895년 주요 면업지역의 1호당 직조량은 최하 3필, 최고 60필이었다(梶村秀樹, 1983). 앞서 자가소비량이 대략 6필 정도였다는 추정을 감안할 때 그 이상의 생산물은 상품화를 위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가에서나 일반 가정에서 생업운영의 수단으로 가정경제에 기여했던 직조물은 납세물로서 국가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가에서는 양역세로 남정(男丁) 1인당 면포 2필(쌀 12斗)을 징수하였고, 균역법으로 남정(男丁) 1인당 면포 1필을 징수하였다(김성우, 1997).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직조물은 개별가정에서 납부한 직조물로 수요가 충족되었으므로 지방 외공장(外工匠)에는 전혀 직장(織匠)을 두지 않았다. 다만 공증기관이나 공조(工曹) 이하 각 관서에만 방직장(紡織匠)과 능라장(綾羅匠)을 두어 고급 직물을 생산하였다(맹인재, 2000).

국가에서 직조물은 우선 군사와 관리의 녹봉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제1과 정1품에게 쌀, 현미, 죽쌀, 콩, 밀 외에 명주, 배, 저화(종이돈)을 지불하였다(윤국일, 1990). 그리고 직조물

은 대외무역의 중요한 품목이 되기도 하였는데, 면포는 대일본(對日本) 수출의 주요 품목으로 물량이 연간 수천 동(同)에 이르렀다(맹인재, 2000).

삼베와 무명은 물품화폐로 사회경제체제 내에서 유통수단의 역할도 하였다. 15세기초까지는 삼베가 물품화폐로서 주종을 이루었으나 이후 무명이 보급되면서 무명이 물품화폐의 주종을 이루었다. 경국대전 호전에는 저화(楮貨)와 함께 마포(麻布)가 국폐(國幣)로 규정되었으나 성종 대에는 마포 대신 면포가 정포로 통용되었다(송재선, 1985).

IV. 직조노동의 가치와 여성의 지위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생산한 직조물은 시장에서 쌀의 가치로 표시되는 화폐기능을 갖고 있었다. 신라 춘추공 시대에 배 한 필은 벼 30석 혹은 50석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일연, 1994), 고려시대에는 고려사 원년의 기록에 의하면 가는 배 한 필은 쌀 닷 되 값을 지니고 있었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3a에서 재인용).

조선시대에는 16세기의 경우 정포의 가격이 쌀 4두(斗)가량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송재선, 1985). 18세기 중엽에도 속대전에 따르면 5승의 무명이나 삼베 1필은 모두 2냥, 쌀 1섬은 5냥으로(이현창, 1997) 또 1필은 쌀 4두와 그 가치가 같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조물의 가치가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화폐가치가 명확하였으므로 여성의 노동 가치는 분명하였다. 그리고 직조노동의 가치는 남성의 농업노동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지 않았다. 직조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조선시대에도 정다산은 '일직부녀승삼농부(一織婦女勝三農夫)' 라 하여 직조하는 부녀 1인이 농부 3인보다 낮다고 하였고, 남자가 45일 걸리는 일을 여자는 한달 만에 해낸다고 평가하였다(김영호, 1972). 정다산의 이런 평가는 미곡생산이 기본이던 농가에서 부녀가 농부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였고 부녀의 생산성이 남자의 생산성 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7) 이익이네

전통사회에서 포 1필이 대략 쌀 4두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최대 양이 60필을 생산하는 것은 쌀 240두를 생산하는 것과 같았다. 박지원(1737-1805년)은 1799년 양인 농민층은 대략 5명 정도의 노동력과 소 1마리를 가지고 논과 밭 모두 약 1결 2부 정도를 경작하여 연간 피곡(皮穀) 497두를 생산한다고 하였다(김성우, 1997). 대략적으로 농부 1명이 일년에 100두의 농산물을 생산하였다고 볼 때, 최고 60필의 배를 짜는 부녀는 농부 2~3인과 같은 생산력을 지니고 있었다. 정다산이 부녀 1인이 농부 3인보다 낫다고 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 이덕무는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5홉을 먹으니 하루에 한 되는 먹는다고 하였다(염정섭, 1997). 포 10필을 쌀로 바꾸면 40두 즉 400되로 성인 1인이 일년 먹을 쌀을 구입할 수 있었고 포 60필을 쌀로 환산하면 성인 6명이 일년 먹을 쌀을 구입할 수 있었다. 부인 1인이 직조로써 논농사를 짓지 않고도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었다.

전통사회의 여성들은 이처럼 화폐가치와 교환가치가 명백한 생산적인 일을 하였고, 이들이 생산한 생 산물은 남성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로 결코 낫지 않았다. 직조물의 가치는 높은 사회일수록 여성들이 신앙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경우 모계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높기도 하였지만(이광자, 1999), 생산력과 경제력이 있었기에 여성은 사회적인 인물로 추앙 받을 수 있었다. 신라 진평왕 대에 영험한 신으로 받들어 졌던 선도산 신모(神母)는 안흥사 불전 수리의 비용을 댄 이였다.

삼국시대에 여성은 경제력을 갖고 사회적인 일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온조에 “내 어머니는 가재(家財)를 기울여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셨으니 그 애쓰심이 컸다”고 하였다. 삼국유사에 베 판 돈을 경전을 옮기는 비용에 써달라는 여성의 요구가 있었고 베 값이 상당히 비쌌던 것으로 미루어 사회적으로 경제력을 발휘하

는 데에 직조물이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삼국시대에 여성은 생산자로서의 지위가 결코 낫지 않았다. 주몽신화의 유화는 하백의 “딸로 대지의 신인 지모신(地母神), 수신(水神)으로서 농업신적 모습을 갖고 있었고(전태호, 1997). 고구려의 남녀의 애정을 주제로 한 전설에서 남성은 견우(牽牛)로 여성은 織女(직녀)로 표현되었다.

삼국시대에 여성은 생산자로서 뿐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수호신으로도 추앙을 받았다. 신라의 나라를 보위하는 세 신령 나림(奈林), 혈례(穴禮), 골화(骨火)는 여성이었다(일연, 1994). 김유신 가의 재매부인은 사후에 장사지낸 곳이 부인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 곳에서 종종행사가 열릴 만큼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일연, 1994). 이처럼 여성이 수호신으로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물적 생산자로서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여성의 지위는 결코 낫지 않았다. 남녀간에 혼인을 가볍게 하였다가 쉽게 헤어졌다고 하는 것은(서궁, 1998), 여성이 남성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성의 경제력은 재산상속시 출가에 관계없이 참여하고, 남녀군분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던 모계적 전통에 의해 확보될 수도 있었겠지만(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4b) 그렇지 않은 경우 직조와 같은 물적 생산노동을 통해 보유하였을 것이다.

여성의 노동가치도 남성에 비해 결코 낫지 않았다. 여성의 노동가치가 남성의 노동가치 못지 않게 평가받았던 것은 노비의 시장가격에서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좋은 나이가 15세 이상 60세 이하이면 값이 베 백필이고, 중의 나이가 15세 이하 60세 이상이면 50필이며, 계집은 나이 15세 이상 50세 이하는 백 20필이고,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60필(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3a에서 재인용)”이었다. 여종이 남자종보다 사용기간이 10년 짧은데도 가격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미루어 일반 여성의 노동가치도 남성의 노동가치에 비해 낫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 여성은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사회질서가 강화되면서 전 시대의 여성보다 남성에 대해 절대적

인 종속관계에 높이게 되었다.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러한 예속적 관계는 외국인인 비숍(1994)의 눈에 다음과 같이 관찰되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강하게 의식하나 남편은 거의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한국의 여성들은 남자와의 차별을 자연적인 둘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계다가 조선시대 여성은 정절 이데올로기에 의해 바깥출입이나 활동이 규제되었고 외출을 할 때에 얼굴을 가려야 했다. 양반의 처는 낮에 나들이함에 반드시 옥교를 타고 밤에 걸어다닐 때는 군상(裙裳: 치마)으로 낮과 몸을 감추었고, 평민의 처도 장옷을 썼다(이능화, 1990). “여자가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계율은 상류계층에서 중인계층까지 가능한 철저하게 지켜졌다(비숍, 1994)” 조선시대 여성은 대부분 남성처럼 가정 밖의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여성은 외출이 금지된 채 남편에 대한 의무만을 수행하였으나 부녀의 지위는 실제적으로 결코 열악하지만은 않았다. 19세기 말 선교사업을 했던 조오지 길모오는 서울에서 본 부인에 대해 그 지위가 낮지 않았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부인들이 집에 들어앉아 있다니까 그들이 이 나라의 사회생활 경제생활에 대해 조금도 관련이 없는 줄 알기 쉽다. 이같은 생각만큼 외국인이 잘못 얻는 인상은 없다. 또 가정에서 별로 대단치 않은 위치를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박용옥, 1976에서 재인용).”

여성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는 가부장제 속에서 조선시대 남편들은 부인을 하대하기는커녕 부인을 두려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거정(1420~1488)이 관변(官邊)의 필담을 모아놓은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에 따르면 어떤 대장(大將)은 아내를 몹시 두려워하여 하루는 부하들에게 아내를 두려워하는 자는 붉은 깃발 아래 그렇지 않은 자는 푸른 깃발 아래 모이라고 하였더니 사람들이 모두 붉은 기 아래로 모였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한악(悍惡)스러운 아내를 둔 자를 많이 보았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90에서 재인용)” 했고, “지금 사람들의 가정을 관찰해 보면 그 권세가 모두 안

방에 있으므로 남편이 강하고 아내가 부드러워 안과 밖이 그 정상을 유지한 가정은 열에 한둘도 없을 정도”라고 했다.

유인몽(1559-1623)도 어우야담(於于野談)에서 “자고로 부인은 다루기 어려운 존재다. 남자가 아무리 강심장을 가졌다고 해도 부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박제가(1750-1805)도 “지금 남자들은 대장부답게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다(박용옥, 1976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부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조선 부인들은 도덕률과는 다르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굴종적이거나 복종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가부장제의 가치규범이 강조되던 양반가정에서 이처럼 여성의 권력을 적지 않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유교이념 속에서 생활유지를 위한 물적 생산노동이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가계유지를 위한 생산노동에의 참여가 더 많았던 일반 평민 부인들의 지위가 남편에 대해 훨씬 더 대등하였다는 기록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헬버트(1984)는 그의 기록에서 “서민층에서는 죽은 남편의 재산에 대해 아내가 상류사회와 경우보다 더 큰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서민 사회에서는 아직도 양자를 맞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미망인은 자기가 바라는 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이 세상을 보람있게 살아보기 위해서는 중류계급의 아내로 태어나야 하며 여자가 죽을 때에는 선비나 상류계급의 남자로 환생되기를 바란다는 믿음이 전해져 오고 있다. 왜냐하면 중류계급의 아내는 상류계급의 경우보다 더 남편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으므로 남편의 사업에 자세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발언권이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기록은 일반 서민층 부인들의 경제적 지위가 상류부인들의 그것보다 높았으며 가계운영자로서의 역할이 커던 계층일수록 남편에 대해 보다 대등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외국인인 다레(1949)는 “약간의 처들은 규범적 단념으로 남편의 평판과 안락을 위해 혼신적으로 복종하나 이외의 많은 처들이 결합 많은 품성을 제멋대로 나타내서 포악하고 불순하여 가정에 분열과 붕괴를 제래하고 있다”고 했다. 전통사회의 많은 부인들이 남성에 대해 순종적이거나 예속적이기 보다 오히려 자기 주장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존여비의 열악한 사회 규범 속에서 부인들이 나름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들이 결코 침범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내업(内業)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가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기 때문이며 부인들의 가내노동을 통한 사회경제에의 기여가 공식적으로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이다.

V. 산업사회에서의 여성의 임노동

1. 초기 산업사회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생산하였던 직포는 조세로 납부되어 국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시장에서는 화폐로 교환되어 가계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사회경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직포 생산으로 여성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생산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말 이후 값싼 공장제 면직물이 수입되면서 여성의 가내 직조 노동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근대 목면 제품은 개항 전부터 영국제품이 적지 않게 유입되고 있었다. 1873년 부산에서 수입된 영국산 금전(金巾: 옥양목)은 4,473 본(本) 17,468엔(円)에 달하였다(일한통상협회보고; 최태호, 1996에서 재인용). 근대 목면 제품의 수입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여 개항 초기에는 전체 수입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커졌다.

청일전쟁 전까지 수입목면은 사치소비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국내 토포생산은 그런 대로 유지 존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 1894년 면화흉작을 계기로 일본산 방직사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토포(土布)산업은 결정적으로 사양

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최태호, 1996).

전통적으로 직물은 면화를 길러 따는 면작과 누에를 치는 양잠, 이를 이용해 직물을 짜는 직포가 결합된 가내수공업에 의해 생산되었다. 그러나 공장에서 대량으로 직포가 생산되면서 원료공급을 위한 면작과 양잠만이 여성의 생산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일제는 1919~1929년 사이에 산미증산계획 외에 면화증산계획, 누에고치증산계획을 농업수탈정책의 중심으로 삼았다(전석담·박극채, 1990).

여성에 의해 생산된 면화는 공판제도에 의해 헐값으로 방직자본가에게 제공되었고, 누에고치도 공판으로 헐값에 강제 수매되었다. 농가 부녀자는 막대한 노동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에서 생계를 보충하는 비중은 낮아졌다. 그나마 여성에 의해 생산된 면화나 누에고치의 판매수익도 여성에게 귀속되지 않고 농화나 조합에 단독 가입한 호주에게 귀속되어 여성의 농업노동은 더욱 더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1992).

이처럼 가내에서 직조노동이 감소하는 한편 상품소비를 위한 화폐의 필요성은 높아지면서 소수인의 토지 독점으로 빈농과 유민으로 전락한 농가의 여성들은 임노동에 자신의 임금을 낮추면서라도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1900년대 초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면화·제사공장, 면업공장, 제분소, 제당 등에 농촌을 이탈한 여성들이 공업인구로 흡수되기 시작하였다.

1917년 광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여성 전체 취업인구의 1.3%에 지나지 않았다. 여성취업인구는 매우 적었지만 전체 광공업 종사자 중 여성의 차지하는 비율은 36.2%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았다(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정진성, 1988에서 재인용). 이것은 산업화가 방직, 정미 등 여성들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공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방직공업에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1931년 공장노동자 중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32%였는데 여공의 대부분인 82.2%가 방직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40년에도 공장노동자 중 여성 노동자는 31.7%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성의 79.3%

가 방직업에 종사하였다(조선총독부통계연보; 정진성, 1988에서 재인용).

산업화 초기에 공장주들은 봉건적 관습으로 여성 노동력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여성노동자를 모집하기 위해 연고자의 소개, 모집원에 의한 모집 등 온갖 갑언이설로 여성노동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할 때는 독자적 경제권을 인정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닌 부모, 친척과 체결하였고 인신매매나 다른 없는 노예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예속을 벗어나지 못하게 강제저축을 시키고 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기숙사제도를 통해 외출을 제한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감시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였다(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1992).

공장에 취업한 여성은 장시간의 노동에도 시달리고 있었는데 1942년 방직공업 노동자의 82.2%가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런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임금차별을 받았다. 방직업에서 남성이 시간당 10전(錢)을 받은데 비해 여성은 6전을 받았다(조선총독부통계연보; 최태호, 1996에서 재인용).

과중한 노동으로 여성노동자들은 만성적 피로와 요통, 두통에 시달렸고 특히 제사공장의 여성들은 움직이는 기계의 실을 집중하여 쳐다보는데서 눈병을 얻었다. 이 외에도 인쇄공의 경우 은중독, 연초회사의 여공은 니코틴 중독, 제사공장 여공은 장시간 앓아서 오는 불임의 직업병을 흔히 겪었다(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1992).

과거에 가사역할로 전수되어 자신들만이 맡아 하던 일로부터 축출된 여성들은 조직적으로 침투해온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독자적인 기반을 상실하였다. 남성들에게 고유의 생산 영역을 빼앗긴 여성들은 남성이 선점한 임노동 시장에서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임노동 시장의 여성들은 전통사회의 부녀자가 남성의 노동력에 못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것과 다르게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았다. 따라서 안정적 기반을 얻으려는 여성들은 전통사회에서

보다 더 결혼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가부장적 전통은 강화되었다.

2.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자가 되고, 여성은 가정에 남아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자가 되는 성별분업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남성의 노동력을 보충하는데 가사를 담당하던 여성이 이용되었다. 여성의 임노동시장 진출은 산업화 시기 동안 계속 증가하였다.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63년 34.8%에서 1970년 36.5%, 1990년 40.8%로 증가하였고(통계청, 2000b)⁸⁾, 여성취업자 중 가족종사자 비율은 1970년 50.4%에서 1990년 24.5%로 감소하였다.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한편 여성의 피고용자의 비율은 1963년 21.8%에서 1990년 56.8%(통계청, 1994)로 증가하였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가족을 기반으로 한 생산조직을 축소·해체시키고 임노동에 의한 생산을 확대시켰다.

여성의 임노동 시장에의 참여 증가는 가부장제의 물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가정에서 남편의 임금에만 의존하던 주부의 의존성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크게 약화되지 않았다. 여성노동자는 여전히 임노동 시장에서 남성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었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에 비해 상당히 낮아서 1971년에 여성노동자는 남성 임금의 44.2%를 받고 있었다(한국여성연구회·한국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 1991).

1970년대 섬유봉제업 분야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여성의 열악한 노동상황은 노동자 전태일이 '신동아'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잘 엿볼 수 있다(전태일, 1971). "동대문 평화시장은 동양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 종업원은 2만 여명이 됩니다…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

8) 실업자를 포함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3년 37.0%에서 1970년 39.3%, 1980년 42.8%, 1990년 47.0%로 증가하였다(통계청, 1994).

입니다… 하루에 90원 내지 1백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5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숙련 여공들은 대부분 헛빛을 보지 못하여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들입니다. 호흡기관 장애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느끼지 못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하루 15시간의 작업시간을 10시간~12시간으로, 1개월 중 휴일 2일을 매주 일요일마다 쉬기를 희망합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된 후 여성의 경제활동의 영역은 과거 직조 또는 농사의 단순한 영역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사무직 등으로 다양해졌다. 그러나 임노동 시장에서 여성은 여전히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1995년에도 제조업 여성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의 52.9%의 임금을 받았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VI. 가사노동 및 임노동의 가치와 여성의 지위

조선시대 여성은 법적으로는 무능력자였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4b). 남편의 허가 없이 부인은 독단으로 행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부권의 지배하에 여성은 종속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여성은 가내에서 독자적인 경제활동 영역을 갖고 있었고, 남편이 처의 경제활동에 의존하는 바가 커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화기에 공장제 직포가 수입되고 토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여성의 가내에서의 경제적 역할은 축소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하락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898년 9월 17일자에 “남촌 사는 어찌 한 놈이 제 처를 팔아 엽전 삼십량을 받아 제 의복을 해 입었다 하니… 어찌 세상에 용납하리오… 본래 여인이 남자에게 낮고 높은 분의가 없거늘 어찌 부인을 멸시하는 폐단이 점점 잣아 저렇게 팔아먹는 놈이 있을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 통탄할 일이로다.”라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1898년 12월 5일 독립신문에 처를 종으로 팔고 도망한 남편, 1899년 1월 11일 제국신문에는 처에게 매음을

시킨 남편에 관한 기사 등 자본주의가 도입되는 시기에 처를 팔거나 매춘을 강제하는 경우가 빈번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산업화 초기에 임노동 시장이 남성에 의해 조직되면서 여성은 공적인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전통 사회에서보다 더 강력하게 제한되었다. 국가는 여성에 대해 더욱 더 전통적이고 의존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가부장제를 지원하였다. 1909년 일본의 호적제도를 모방하여 만든 민적법(民籍法)에서 가족에 대한 호주의 권리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호주에게 가족의 거소(居所)지정권, 가족의 교육·감호·징계권, 가족의 혼인·입양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서자입적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거가(去家)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분가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재산 관리권, 처분승낙권, 가족의 금치산·준금치산 선고의 청구권 및 그 취소청구권, 가족의 후견인·보좌인이 될 권리, 친족회에 대한 권리, 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 상속에 있어서의 특권 등 강력한 가부장권이 부여되었다(김주수, 1987).

1921년에는 일본구민법(舊民法)을 적용하여 처가부의 허가를 얻어야 할 중요 법률행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원본영수(元本領收) 내지 이용행위, 차재(借財) 또는 보증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동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증여, 화해, 중재계약체결행위, 상속승인 및 포기 행위, 증여 내지 유증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신체에 구속을 받을 계약을 맺는 행위 등 광범위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1984b).

이에 따르면 여자는 중요한 재산을 사고 팔 때, 돈을 대차하거나 남을 보증할 때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신체에 구속을 받을 계약을 맺는 행위에 대해 남편의 허가가 필요했으므로 여자는 남편의 동의 없이는 고용되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공적 활동이 제한되는 한편 임노동에서의 노동조건도 열악하여 여성은 가정에 남아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직조가 사라지고 나서도 가정에서 여성들은 농사에도 관여하고 부업을 갖는 등 경제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직조처럼 가계와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못하였고 그 기여를

독자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또한 노동시장과 분리된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은 일로서 평가받지 못하였다. 1970년대 이후 가정에 도입된 가정기기와 시장상품은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크게 감소시켜주지 못하였음에도 주부들을 더욱 할 일이 없는 존재로 보이게 하였다(김성희, 1996). 가정주부는 흔히 '집에서 노는' 또는 '아무 것도 안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가사노동은 '노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상례였다(손덕수, 1985).

전통사회에서의 가사노동에 비해 더 많은 새로운 일이 증가되고 상품을 소비하는데에도 부가적인 일이 계속 요구되었음에도 무보수의 가사노동은 임금노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975년 한 여성잡지 기고문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너무 부르짖다 보니 마치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성은 모두 안일하고 무기력한 사람들로 치부해버리는 것 같다(여성동아, 1975. 1)"는 불만의 글이 실렸다. 1970년대부터 여성잡지에는 "주부는 무엇으로 보람을 찾을 것인가 회의하게 된다(여성동아, 1975. 7)" 또는 "할 일 없는 공허감, 보수 없는 일(여성동아, 1970. 7)"이라고 사회적 노동과 분리된 주부의 가사노동의 무가치성을 표현하는 글이 게재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1980년대부터 가사노동의 생산적 성격을 규명하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이기영, 1982; 문숙재, 1982; 임정빈, 1984; 김애실, 1985; 이정우·최보규·최명숙, 1987 등). 그러나 1990년대에도 주부들은 상해, 재해, 이혼 등의 법적 문제에 있어 여전히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임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도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공포로 차츰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은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다. 임금차별을 나타내는 남자 대 여자의 임금비는 1977 43.9에서 1998년 63.1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통계청, 2000b).

VII. 결 론

삼국·고려·조선시대의 전통사회 여성은 가내에서 직조를 하여 가족의 의복소비를 충족시키는 한편 자가생산된 생산물을 시장에서 교환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가계의 부를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직조물은 시장에서 물품화폐로써 사회경제상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조세로 납부되어 국가재정의 주요한 자원이 되었다.

전통사회 여성은 오늘날의 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가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명백히 공적이고 경제적인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취업 주부들이 가정 내에서는 가족의 노동력재생산을 위해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가계운영에 필요한 소득과 부를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 노동을 하는 것처럼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일을 병행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는 산업사회에서 일어난 특징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현대산업사회에 걸쳐 계속되어온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노동의 장소와 노동의 종류에 변화가 있었을 뿐이었다.

전통사회의 여성은 고유한 생산영역을 확보하고 경제활동인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으므로 산업사회의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낮지 않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 대해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성은 물적 생산과 생업을 소홀히 하는 남성을 대신하여 경제력과 생산력을 보유하였으므로 남성에 대해 적지 않은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로 공장제품이 등장하면서 가내에서 여성의 직조활동이 사라지고 주부의 노동력은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가족의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무보수의 노동만 수행하게 됨에 따라 주부가 가계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비가시적인 것이 되었다.

고유의 생산영역을 상실한 여성들은 화폐소득과 가계운영을 위해 임노동 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임노동 시장을 조직하고 선점한 남성에 의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작업환경에서 차별을 받았다. 여성은 산업노동자로서 많은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치는 대체로 남성의 절반 정도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여성의 지위는 하락하였다.

여성의 지위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뿐 아니라 독자적 생산영역의 확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부장적 규범이 더 강조되었던 전통사회에서보다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은 고유의 물적 생산 노동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사회에서의 내외법에 의한 성역할 분리는 전통사회의 여성에게는 지위를 확보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내외법에 따라 확보되었지만 산업사회에서 가사노동이라는 성별분업에 따른 고유영역은 공적 생산과 연계되지 못하여 여성에게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미래사회에서는 이런 모순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생산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성의 공간과 일의 종류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으면서도 남성과 상호 보완하는 고유한 생산 영역, 예를 들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살핌과 관계성을 과제로 하는 공적 노동을 확보하는 것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접수일 : 2001년 7월 6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8월 1일

【참고문헌】

〈사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지, 당서, 주서, 일본서기, 만엽집, 고려도경, 동국이상국집, 서경별곡, 도은집, 운곡시사, 포은선생집, 가정집, 애은집, 고려사, 중보문현비고, 이계집, 구봉집, 경자록, 경국대전, 속대전, 청장관전서, 태평한화골계전, 성호사설, 어우야담.

〈신문 및 잡지〉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제국신문, 중앙일보, 여성동아.

〈단행본 및 논문〉

- 고영복(1971).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아세아여성연구 10, 1-24.
- 김기웅 해설(1994). 고구려 고분벽화. 서울: 서문당.
- 김성우(1997). 농민의 조세부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청년사, 198-209.
- 김성희(1996). 가정기기 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애실(198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여성연구 3(4), 25-47.
- 김영호(1972).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19세기의 한국사회. 대동문화 연구원, 171-217.
- 김용섭(1972). 18·9세기의 농업실정과 새로운 농업경영론. 19세기의 한국사회. 대동문화 연구원, 1-170.
- 김용숙(1971). 이조여인상연구. 아세아여성연구 10, 111-157.
- 김점호 구술·유시주 편집(1990). 베도 술한 베 짜고 밭도 술한 밭 매고. 서울: 뿌리깊은 나무.
- 김주수(1987). 한국근대여성의 법률상의 지위. 한국근대여성연구.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7-40.
- 다례(1948). 조선교회사. 이능식·윤지선 역. 서울: 대성출판사.
- 맹인재(2000). 한국의 민속공예. 서울: 청목.
- 문숙재(1982).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0(4), 177-184.
- 박남수(1996). 신라수공업사. 서울: 신서원.
- 박용옥(1976). 이조여성사. 서울: 춘추문고.
- 변태섭(1987). 한국사통론. 서울: 삼영사.
- 서거정(1998). 태평한화골계전. 이내종 역주. 서울: 태학사.
- 서궁(1998). 선화봉사 고려도경. 정용석 김종윤 공역. 서울: 움직이는 책.
- 손덕수(1985).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여성과 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 연구소 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47-293.

- 손제하(1996)a.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고대 하이테크 100가지. 서울: 일빛.
- _____(1996)b. 우리가 일본에 전해준 고대 하이테크 100가지. 서울: 일빛.
- 송재선(1985). 16세기 면포의 화폐기능, 변태섭박사 회갑기념사학논총. 서울: 삼영사.
- 염정섭(1997). 농민의 하루살이와 한해살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서울: 청년사, 223-245.
- 윤국일(1990). 경국대전연구. 서울: 신서원.
- 이가원·장덕순·박성의·양주동(1985). 원역 향가여요. 서울: 서음출판사.
- 이광자(1999). 한국전통사회의 여성. 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이규순 교주(1983). 여사서. 서울: 문학세계사.
- 이기영(1982). 가사노동의 경제적 의의와 평가에 관한 소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사대 논집 7, 125-145.
- 이능화(1990). 조선여속고. 김상의 옮김. 서울: 동문선.
- 이복만(1948). 이조사회경제사. 서울: 대성출판사.
- 이사벨라 버드 비숍(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인화 옮김. 서울: 살림.
- 이정옥(1999). 내방가사의 향유자. 서울: 박이정.
- 이정우·최보규·최명숙(1987).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25 (4), 99-111.
- 이현창(1997). 돈 한닢, 쌀 한말, 베 한 필의 가치.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서울: 청년사, 117-128.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1983)a. 한국여성관계자료집 중세편(상). 이화여자대학교.
- _____(1983)b. 한국여성관계자료집 중세편(하). 이화여자대학교.
- _____(1984)a.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고대편. 이화여자대학교.
- _____(1984)b. 한국여성사 I. 이화여자대학교.
- _____(1984)c. 한국여성사 II. 이화여자대학교.
- _____(1990).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세편(문집). 이화여자대학교.
- 일연(1994). 신편삼국유사. 리상호 옮김. 서울: 신서원.
- 임정빈(1984). 가정노동의 경제적 가치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한국생활과학연구 2, 117-132.
- 장필화(1998). 여성의 사회적 위치: 일, 가족, 국가와의 체계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여성학의 이해. 한국여성학연구회편. 서울: 경문사, 89-117.
- 전석담·박극채(1990). 조선경제사팀구. 서울: 범우사.
- 전태일(1971). 인간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신동아. 1971. 1월호, 104-129.
- 전태호(1997). 한국고대의 여성.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학회편. 서울: 서경문화사, 85-144.
- 전호태(1999).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서울: 풀빛.
- 정진성(1988).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여성노동의 변모. 한국여성학 4. 한국여성학회.
-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 통계청(1994).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 _____(1999).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2000)a.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 _____(2000)b. 도표로 보는 통계
- 최태호(1996). 근대한국경제사연구. 서울: 국민대학교교출판부.
- 한국여성개발원(1998). 1998 여성통계연보.
-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1992). 한국여성사-근대편. 서울: 풀빛.
- 한국여성연구회·한국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1991). 여성노동자와 임금. 서울: 동녘.
- 헐버트, H. B.(1984). 대한제국멸망사. 신용복 옮김. 서울: 평민사.
- 황명수·김병하·신두휴·김성수·고승희·이광주·황완성(1992). 한국의 시장산업사. 서울: 신세계백화점 출판부.
- 梶村秀樹(1983). 이조말기(개항후) 면업의 유통 및 생산 구조. 한국근대 경제사연구. 서울: 사계절, 101-206.